

제2023-98호 2023년 11월 10일(금)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3-50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1
- 여수시 고시 제2023-508호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고시(소라면 북산리 1984-2) 2
- 여수시 고시 제2023-510호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고시 3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3-3074호 2024년 여수형어린이집 신규 선정 모집 5
- 여수시 공고 제2023-3083호 하반기 농가DB구축 기간제근로자(전산)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26
- 여수시 공고 제2023-3093호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공고 27
- 여수시 공고 제2023-3094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공고 28
- 여수시 공고 제2023-3095호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9
- 여수시 공고 제2023-3096호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강제 철거 및 행정 대집행 계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31
- 여수시 공고 제2023-3100호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시행규칙)안 입법예고 34

회 람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시 고시 제2023 - 50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신고)하고 고시합니다.

승인 (신고) 번호	실시계획 승인 (신고)수리	시 행 자		사업착수 예 정 일	사업준공 예 정 일	점용·사용 장 소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23-31	2023. 11. 9.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장 (섬발전자원과)	'23. 11.	'24. 3.	여수시 남면 화태리 4-5번지 일원	남면 화태리 마죽항 방파제 정비공사

2023. 11. 10.

여 수 시 장

여수시 고시 제2023-508호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여 수 시 장

1. 허가번호: 제2023 - 00057호
2. 허가일자: 2023년 11월 10일
3. 점용·사용의 장소: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984-2
4. 점용·사용의 면적: 55㎡
5. 점용·사용의 기간: 2023-11-10 ~ 2024-05-31
6. 점용·사용의 목적: 경작용
7.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 성 명: 조영심
 - 주 소: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복산마산길 34-7

끝.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1. 10.

여 수 시 장 (인)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내용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이동 사유	비고
	별	지		기	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061-659-3355~335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114-1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여순로 210-87	20231110		20091013	여수에서 순천을 연결하는 도로로 양시의 행정명칭 조합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 256-16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1로 42 (봉산동)	20231110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폐지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1로 42 (봉산동)		20231110	건축물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폐지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장수자매길 29		20231110	건축물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분할	전라남도 여수시 남산로 43 (남산동)	전라남도 여수시 남산로 41-1 (남산동)	20231110		20091013	남산동을 지나는 길	
건물번호분할	전라남도 여수시 남산로 43 (남산동)	전라남도 여수시 남산로 43 (남산동)	20110729		20091013	남산동을 지나는 길	
건물번호폐지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385-2		20231110	건축물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폐지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385		20231110	건축물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084-4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385	20231110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1182-18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장수자매길 29	20231110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252-5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계동로 527	20231110		20091013	도로가 지나는 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654-9	전라남도 여수시 웅남1길 20-28 (웅천동)	20231110		20110209	지역 및 위치예측성	

2024년 여수형어린이집 신규 선정 모집 공고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 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우수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여수형어린이집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 11. 10.

여 수 시 장

1. 선정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여수형어린이집 신규 선정
- 선정대상 : 3개소(민간·가정어린이집)
- 사업내용 : 신청자격 및 선정요건 등 세부사항 붙임 참조
- 선정기준 : 참여 기본요건을 갖추고,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 중 세부 선정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방법 : 선정공고에 따른 신청접수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정
- 유효기간 : 2024 1. ~ 12.
* 공공형 선정 제외시 1회에 한해 재선정(세부 선정기준 점수 80점 이상)
- 선정절차



2. 모집기간 및 접수

- 가. 공고기간 : 2023. 11. 10.(금) ~ 11. 30.(목) (20일간)
- 나. 접수기간 : 2023. 11. 20.(월) ~ 11. 30.(목) (10일간)
- 다. 접수장소 : 여수시청 여성가족과 보육정책팀(☎061-659-3763)
- 라.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접수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마. 제출서류 : 여수형어린이집 신청서 및 자기평가서, 관련 실적 증빙서류
- 바. 공고방법 : 여수시 홈페이지 (<http://www.yeosu.go.kr>) “고시·공고” 게시

3. 결과발표 및 사업시행일

- 가. 결과발표 : 2023. 12. 중 여수시 홈페이지 공고
- 나. 사업시행 : 2024. 1. 2.(화)

4. 유의사항

- 가. 지원내용, 선정 후 운영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는 「2024년 여수형어린이집 선정 계획」의 세부 선정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바랍니다.
- 나.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무효처리될 수 있음.
- 다. 신청수수료는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여수시청 여성가족과 보육정책팀(☎061-659-37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여수형어린이집 신청서

[1 면]

여수형어린이집 신청서										
어린이집명		최초인가 일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주소)	우편번호 □ □ □ □ □									
대표자 * 인가증 제출	이름		연락처							
원장 * 경력 및 학력 증명 증빙서류 제출	이름		연락처							
	학력	□ 대학(원)명 :		□ 전공 :		□ 학위 :				
	보육교사 경력		원장 경력							
정원 / 현원	□ 정원(명)		□ 현원(명)							
농어촌지역 * 농어촌 및 농어촌 특례 지역	□ 해당 □ 비해당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 야간연장보육 □ 휴일보육 □ 장애아보육									
건물소유형태	□ 자가 전용 □ 자가 복합 □ 임대 전용 □ 임대 복합 □ 아파트 관리동 내 어린이집 *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이용형태 전용(예 : 공동주택 내 위치한 임대 어린이집은 임대 전용 선택)									
열린어린이집 지정 여부	□ 지정 □ 미지정									
보육교직원 현황										
※ 유의사항 - 출산·육아휴직 중인 교사 포함 -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인 경우 보육교사 인원에는 산정하지 말 것 * 보육교직원 경력증명 증빙서류 제출(보육교사 보수교육 수료증 및 관련학과 학력 증명 증빙서류 제출)										
총 인원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사무원	운전원	치료사	기타	특수교사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구분	이름	자격구분		현 자격 취득일자	현 어린이집 임용일자	최근 보수교육 일자	학력			
		자격증	급수				학위	전공		
보육교사		보육교사 자격증								
		유치원교사 자격증								
		특수교사 자격증								
※ 자격구분 : 동일인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모두 기재										

2. 여수형어린이집 신청자 자체평가서

[1 면]

여수형어린이집 신청자 자체평가서

□ 어린이집이 건물의 1층에 소재한 경우

어린이집형태	세부 검토 항목	충족여부
1층 (3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도록 주출입구 외의 비상용 출구(사람 출입 가능한 창문, 베란다 등)가 있음 ○ 출구의 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으로부터 1.2m 이내이며, 건물 외부의 도로 또는 대지 등에 안전하게 직접 연결되어 있음 ○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음 <p>*「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p>	<p>()</p> <p>()</p> <p>()</p>

□ 어린이집이 건물의 2층 이상에 소재 또는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

* 건물 전체 사용 시 1층에 해당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 기준 또한 충족해야 함

○ 아래의 ①~③ 중 하나라도 충족시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인정

① - 2층, 3층의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를 건물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로 정상적으로 작동함

-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
예 () 아니오()

② -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내부에 직통계단이 2개 이상 설치되어 있음

-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
예 () 아니오()

③ - 아래 어린이집 형태에 따른 세부 검토 항목을 모두 충족함

-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
예 () 아니오()

2층 이상	비상계단 (4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계단은 돌음계단으로 설치하지 아니함 ○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너비는 26cm 이상 ○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높이는 16cm 이하 ○ 비상계단으로 진입하기 위한 출구(출입문 또는 창문)의 유효 높이는 1.5m 이상, 유효폭은 0.75m 이상임 	<p>()</p> <p>()</p> <p>()</p> <p>()</p>
	피난용 미끄럼대 (4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피용 미끄럼대는 지붕이 개방된 구조의 직선형 미끄럼대 또는 반원통형의 나선형 미끄럼대를 의미함 ○ 기존(2009.7.3이전)에 설치된 원통형 미끄럼대의 경우 불량 또는 위험한 경우 직선형, 반원통형 등 현행 기준으로 재설치 ○ 미끄럼대는 어린이집의 2층과 3층에 설치하며, 층별로 각각 설치함 	<p>()</p> <p>()</p> <p>()</p>
	2개중 1개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선형 미끄럼대 경우) 미끄럼대의 활주관의 평균 경사도는 25° 이상~ 35° 이하로 설치하며, 활주관의 평균경사도가 35°를 초과하고 40° 이하인 경우 수직높이 3m 이내마다 계단참(중간참)을 두어야 함 ○ (나선형 미끄럼대 경우) 전체 회전 각도의 합이 3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일정 지점에서 120° 이하의 급격한 회전 각도를 갖지 않도록 설치함 	<p>()</p> <p>()</p>

여수형어린이집 신청자 자체평가서

구분	영역	시설환경				보육서비스					교직원 운영관리					기타	
구분	총점	건물소유형태	대표자원장동일인	정원충족률	최근3년간대표자변경여부	연장반운영전담교사	열린어린이집지정여부	취약보육서비스운영여부	시간제보육운영여부	최근6개월간식재료비지출	원장및보육교사의보수교육이수	담임교사인비급수준	현어린이집에근속한보육교사	1급보육사비율	영유관학과전문사	원장의전문성	자율평가항목
배점	100점	15점	5점	17점	3점	3점	5점	2점	1점	4점	4점	15점	5점	10점	4점	6점	1점
득점																	

항목	배점	평가지표	점수
시설환경	40점	소계	
건물 소유형태	15점	① 자가 전용 어린이집	
	12점	② 자가 복합 어린이집	
	12점	③ 관리동 어린이집	
	9점	④ 임대 전용 어린이집	
	6점	⑤ 임대 복합 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 동일인	5점		
정원충족률	17점	① 평균 정원충족률 <u>75.00%</u> 이상(농어촌 50.00% 이상)	
	12점	② 지역별 표준편차를 적용한 정원충족률 이상~ <u>75.00%</u> 미만(농어촌 40.00% 이상~50.00% 미만)	
	7점	③ 지역별 표준편차를 적용한 정원충족률 미만(농어촌 40.00% 미만)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여부	3점		
보육서비스	15점	소계	
연장반 운영 및 전담 교사 채용 여부	3점	① 연장반의 50% 이상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2점	② 연장반의 20%~50% 미만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1점	③ 연장반의 20% 미만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 연장반 미운영 포함	
열린어린이집 지정 여부	5점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2점	장애아보육, 야간연장보육, 휴일보육 실시	
시간제보육 서비스 운영 여부	1점		
최근 6개월 간 급식·간식 재료비 지출 수준	4점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여수시에서는 여수형어린이집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필수 항목] 이름, 성별, 생년월일, 소속, 직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여수형어린이집 지정 기준 중 대표자 및 원장의 1인 1시설 운영 및 매도 경력 여부 등 확인

[보유 및 이용기간] 여수형어린이집 지정 완료 후 폐기

귀하는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여수형어린이집 지정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수시에서는 여수형어린이집 신청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의 유치원 설치·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개인정보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보건복지부를 통해 교육부(교육청)에 제공하게 됩니다.

[정보 제공 범위] 이름, 성별, 생년월일, 소속, 직위

[정보의 이용 목적] 유치원 설치·운영 여부 확인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여수형어린이집 지정 완료 후 폐기

귀하는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여수형어린이집 지정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항목

이름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소속	어린이집	직위	<input type="checkbox"/> 대표자 <input type="checkbox"/> 원장
어린이집 주소			

년 월 일

동일자 성명 : (서 명)

여수시장 귀하

4. 여수형어린이집 평가표(지자체용/ 제출 불요)

[1 면]

여수형어린이집 시군구 평가표							
어린이집 기본정보	어린이집명		최초 인가일자		전화번호		
	소재지(주소)				팩스번호		
	농어촌지역 * 농어촌 및 농어촌 특례지역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제외 대상 요건	설립 유형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법인 <input type="checkbox"/> 법인·단체 등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가정 <input type="checkbox"/> 협동					
	정부지원 여부	<input type="checkbox"/> 인건비 <input type="checkbox"/> 차량운행비 <input type="checkbox"/> 교재교구비 <input type="checkbox"/> 지자체특수시책					
	어린이집 및 원장 행정처분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행정처분 일자 :)	행정 처분 내용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1호~제3호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의2호 및 제4호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시설폐쇄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2의 과징금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른 제21조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 제4호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내지 제48조 * 원장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아동복지법 17조, 아동법 제2조제2호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로 인한 행정처분			
		<input type="checkbox"/> 없음(공고일 현재 5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어린이집 및 원장)					
	비상재해 대비시설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놀이터	<input type="checkbox"/> 있음 (유형 : <input type="checkbox"/> 옥내 <input type="checkbox"/> 옥외 <input type="checkbox"/> 인근 <input type="checkbox"/> 기타(공동놀이실 설치 등) <input type="checkbox"/> 없음 * 공동놀이실의 경우 어린이집 인·허가 도면, 최근 한 달간 보육계획안·보육일지를 통해 확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	<input type="checkbox"/> 준수 <input type="checkbox"/> 미준수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조항 위반 현황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여수형어린이집 지정 취소 및 포기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취소 및 포기 일자)			취소 및 포기 사유		
		<input type="checkbox"/> 비해당(공고일 현재 3년 이내 공공형 지정 취소 및 1년 이내 포기 이력이 없는 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의 타 시설 설치·운영 재직 여부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원장 및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집 * 설치·운영자란 대표자를 의미함						

여수형어린이집 시군구 평가표																		
제외 대상 요건	월 임대료 및 유자금 이차상환액		보육료 수입의 <input type="checkbox"/> 5% 미만 <input type="checkbox"/> 5% 이상															
	정보공시 여부		<input type="checkbox"/> 공시 <input type="checkbox"/> 공시하지 않음															
	민원 발생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민원 내용				발생 일시				민원 발생 횟수						
				<input type="checkbox"/> 없음														
구분	영역	시설환경					보육서비스					교직원 운영관리					기타	
구분	총점	건물 소유형태	대표자 원장 동일인	정원 충족률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여부	연장반 운영 및 전담 교사	열린 어린이 집 지정 여부	취약 보육 서비스 운영 여부	시간제 보육 운영 여부	최근 6개월 급식 재료비 지출	원장 및 보육 교사의 보수 육이	담임 교사 인급 수준	현 이 집 근 속 육 교 사	1 급 보 육 교 사 비 율	영 유 아 관 련 학 과 전 문 학 사	원 장 의 전 문 성	자 율 평 가 항 목	
배점	100점	15점	5점	17점	3점	3점	5점	2점	1점	4점	4점	15점	5점	10점	4점	6점	1점	
특점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시설·환경	40점	소계	
건물 소유형태	15점	① 자가 전용 어린이집	
	12점	② 자가 복합 어린이집	
	12점	③ 관리동 어린이집	
	9점	④ 임대 전용 어린이집	
	6점	⑤ 임대 복합 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 동일인	5점		
정원충족률	17점	① 평균 정원충족률 75.00% 이상(농어촌 50.00% 이상)	
	12점	② 지역별 표준편차를 적용한 정원충족률 이상~75.00% 미만 (농어촌 40.00% 이상~50.00% 미만)	
	7점	③ 지역별 표준편차를 적용한 정원충족률 미만 (농어촌 40.00% 미만)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여부	3점		
보육서비스	15점	소계	
연장반 운영 및 전담 교사 채용 여부	3점	① 연장반의 50% 이상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2점	② 연장반의 20%~50% 미만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1점	③ 연장반의 20% 미만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 연장반 미운영 포함	
열린어린이집 지정 여부	5점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2점	장애아보육, 야간연장보육, 휴일보육 실시	
시간제보육 서비스 운영 여부	1점		
최근 6개월 간 급식· 간식 재료비 지출 수준	4점		

여수형어린이집 시군구 평가표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점수																								
보육교직원 운영관리	44점	소계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이수	4점	① 원장·보육교사 모두 이수한 경우																									
	2점	② 원장만 보수교육 이수한 경우																									
	2점	③ 보육교사만 모두 보수교육 이수한 경우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15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점수</th> <th>교사 수</th> </tr> </thead> <tbody> <tr> <td>1호봉(2,099,100원) 이상</td> <td>15점</td> <td>a</td> </tr> <tr> <td>2,060,000원 이상~2,099,100원 미만</td> <td>12점</td> <td>b</td> </tr> <tr> <td>2,040,000원 이상~2,060,000원 미만</td> <td>9점</td> <td>c</td> </tr> <tr> <td>2,020,000원 이상~2,040,000원 미만</td> <td>6점</td> <td>d</td> </tr> <tr> <td>2,018,580원 이상~2,020,000원 미만</td> <td>3점</td> <td>e</td> </tr> <tr> <td>최저임금(2,010,580원) 미만</td> <td>0점</td> <td>f</td> </tr> <tr> <td>계</td> <td></td> <td>N</td> </tr> </tbody> </table>	구분	점수	교사 수	1호봉(2,099,100원) 이상	15점	a	2,060,000원 이상~2,099,100원 미만	12점	b	2,040,000원 이상~2,060,000원 미만	9점	c	2,020,000원 이상~2,040,000원 미만	6점	d	2,018,580원 이상~2,020,000원 미만	3점	e	최저임금(2,010,580원) 미만	0점	f	계		N	
		구분	점수	교사 수																							
		1호봉(2,099,100원) 이상	15점	a																							
		2,060,000원 이상~2,099,100원 미만	12점	b																							
		2,040,000원 이상~2,060,000원 미만	9점	c																							
		2,020,000원 이상~2,040,000원 미만	6점	d																							
		2,018,580원 이상~2,020,000원 미만	3점	e																							
		최저임금(2,010,580원) 미만	0점	f																							
		계		N																							
		* 계산식: $[(15 \times a) + (12 \times b) + (9 \times c) + (6 \times d) + (3 \times e) + (0 \times f)] / N$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현 어린이집 근속 보육교사 비율	5점	① 3년 이상 근속한 교사 50% 이상																									
	3점	②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50% 이상																									
	1점	③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 이상 50% 미만																									
1급 보육교사 비율	10점	① 70% 이상(농어촌 50% 이상) * 교사 총 3명 중 2명이 해당될 경우 70%로 인정																									
	5점	② 50% 이상 70% 미만(농어촌 30% 이상 50% 미만)																									
	3점	③ 30% 이상 50% 미만(농어촌 15% 이상 30% 미만)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 학위를 소지한 보육교사	4점	① 70% 이상 * 교사 총 3명 중 2명이 해당될 경우 70%로 인정																									
	2점	② 50% 이상 70% 미만																									
원장의 전문성	1점	①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 학위소지자																									
	1점	② 원장의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2점	③ 원장으로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경우																									
	2점	④ 원장으로서의 현 어린이집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기타	1점	소계																									
자율평가 항목	1점	기타 자율평가 항목 중 해당 시 점수 부여																									

5. 여수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

1) 참여 기본요건

- **2024년도 공공형어린이집 및 열린어린이집 신청(의무 조건)**
-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평가 및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등급 또는 점수가 최상위등급 또는 2차·3차 지표 시범사업인 경우 90.00점 이상인 어린이집
 - 지정 공고일 이후 평가 및 평가인증 결과가 최상위등급이 아닐 경우, 지정 대상에서 제외
-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 ※ 반별 정원 탄력편성, 교직원 배치기준 준수 등

2) 지정 제외대상

-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5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및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 중인 어린이집, 행정처분 또는 처벌절차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
 - ※ 처분이력 어린이집의 신청제한기간 ±2년 내 가감 가능
- ‘행정처분 또는 처벌’의 범위(표준안)
 - ①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
 - ②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의2호 및 제4호에 따른 비용반환명령
 - ③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 ④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의 과징금
 - ⑤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
 - ⑥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 ⑦ 보육료 부정유용(횡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 ※ ⑥, ⑦번 적용 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참고

▪ 행정처분 범위 중 ⑥,⑦번 관련사항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은 ‘보육료를 보조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후(’14.6) ‘보육료에 대한 부정행위’를 처분하기 위해 근거법으로 활용하고 있음
- 기존처럼 보육료에 대한 부정수급, 부정유용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조치한다고 가정하여, 제40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원인으로 운영정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위반행위 대해서만 제외 대상으로 적용
- 예시1 교사나 아동 허위등록, 출석일수 조작 등을 통한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따른 부당이득징수 처분 받은 경우 : 지정, 재지정 제외 및 지정취소대상
- 예시2 보육료나 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개선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지정, 재지정 제외 및 지정취소 대상
- ※ 지출증빙서류 미비, 예산과목 적용오류 등으로 개선명령·처분을 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⑧ 어린이집의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5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 ※ 행정처분은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내지 제48조에 따른 처분을 의미

- ※ 시·도에 따라 처분이력 어린이집의 신청제한기간 ±2년 내 가감 가능

-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어린이집

-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여수형어린이집으로 지정 후 취소된 경우, 지정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어린이집,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어린이집, 유치원)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어린이집
 -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원장에 대해서만 적용

- 설치·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이자 상환액이 보육료 수입의 5% 이상인 어린이집

- ※ 여건에 따라 +5% 가능

- 산정시점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부터 이전 6개월 평균

- 보육료 수입은 부모 부담 보육료, 정부 지원 보육료(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연장보육료)를 합한 금액으로 기타 필요경비 수입은 제외함

- **계산식**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이자 상환액) / (월 보육료 수입) × 100

- ※ 용자금 상환액은 해당 어린이집(담보설정)에 대한 이자상환액(재무회계 규칙에 의해 원금상환은 불가)을 의미함.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이자 상환액을 어린이집 운영비 및 운영비 외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경우를 모두 합한 액수로 산정(대출(상환)내역 제출 등)

-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에서 평가함

-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어린이집 정보공시 항목을 공개하지 아니한 어린이집

- 판단시점 : 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 ※ 정보공시 항목 및 공시시기 관련 기준은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 판단시점(구비여부): 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 ※ 설치 기준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육사업안내를 따름

- 놀이터(옥외, 옥내, 인근놀이터를 말함)를 갖추지 못한 어린이집
 - ※ 옥외놀이터, 옥내놀이터, 인근놀이터 기준은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 ※ 놀이터 설치기준은 지속 준수되어야 함(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심사 당일에만 이동식놀이기구를 비치하고 지정된 후 놀이터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지정 제외)

참고

▪ 여수형어린이집 신청 대상 50인 미만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기준

- (필수조건) 놀이터 설치기준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 ※ 지자체 담당자 현장확인 필수
- (놀이터 종류) 옥외, 옥내, 인근놀이터
 - 옥외, 옥내놀이터 면적 기준 : 21인 × 45% × 3.5㎡(33.07㎡)
 - ※ 정원이 40~49인 어린이집에서 평가 및 평가인증 결과 아래항목을 충족한 경우 상기 면적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같음
 - 2차 평가인증지표 항목 1-3(옥외놀이터와 놀이기구)의 평정결과가 우수한 수준(3점)
 - 3차 평가인증지표 항목 1-3의 1, 2문항(1-3-1, 1-3-2)에서 Y를 받은 경우
 - 3차 평가인증 통합지표 항목 2-2(실외 공간 구성)에서 우수를 받은 경우
 - 평가지표 항목 2-2(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에서 우수를 받은 경우
 - 해당지표에 대한 평가인증 점수 확인이 필요할 경우 '한국보육진흥원'에 공문으로 요청
 - 인근놀이터의 경우, 보육사업안내의 인정기준 증빙자료* 제출확인(2023년 보육사업안내 p.47)
 - *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 및 인근놀이터 관리주체의 사용승낙서
 - *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용놀이터의 경우,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 승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고정식놀이기구가 있는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필증을 증빙자료로 제출
 - ※ 유효기간 내의 설치검사필증만 인정
- (지자체 시스템 정보변경 절차) 어린이집에서 공공형어린이집 신청 전 놀이터 관련 증빙서류 및 현장 확인을 완료하고 시스템의 정보를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자체 업무여건에 따라 수기로 신청서를 받고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현장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함. 다만, 현장 확인 이후 시스템의 정보를 변경하고 어린이집에서 시스템 상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공동놀이실을 확보하고 발달 수준에 적합한 신체 활동을 매일 수행하는 시설 허용
 - 공동놀이실: 어린이집 인·허가 시 제출 자료(도면) 등으로 확인 가능(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용)
 - 발달 수준에 적합한 신체활동: 최근 한 달 간 보육계획안·보육일지 등 어린이집 제출 자료로 확인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 미흡 및 영상정보 열람금지 조항을 위반한 어린이집
 - ※ 설치·관리 및 열람금지 기준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육사업안내를 따름
- 누리과정을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 보조교사를 최소 기준 이상으로 채용하지 않은 어린이집
 - 판단 기준: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 전월부터 이전 3개월 중 2/3 이상 채용한 경우 인정
- 그 밖에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어린이집

3) 세부 지정기준(지역별 자율 평가)

기준 보육교사 공통 적용기준

- 기본보육 담임교사에 대해서만 적용(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시간제보육 담당교사 제외)
-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일 경우, 원장은 보육교사 산정에서 제외
- 유치원 정교사 및 특수교사는 1급 보육교사에 포함
- 출산·육아휴직 중인 보육교사는 1급 비율, 관련학과, 근속 보육교사 비율에 포함
- 대체교사의 경우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산정 시 포함

가) 시설·환경

□ 건물 소유 형태

- 판단시점 : 시·도별 지정계획 공고일 현재
- 소유여부 : 자기 소유 시설인 경우(자가), 자기 소유 시설이 아닌 경우(임대)
※ 부부공동소유인 경우 자가로 인정
- 이용여부 : 단독 건물에 설치·운영되는 어린이집(전용), 한 건물에 어린이집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복합)
※ 공동주택(건축법 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 전용으로 취급(건축물대장 등 공적 서류로 확인)
- 배점기준 : 자가 전용(15점), 자가 복합(12점), 관리동 어린이집(12점), 임대 전용(9점), 임대 복합(6점)

□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여부

- 판단시점 : 시·도별 지정계획 공고일 현재
- 배점기준 :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인 경우(5점),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0점)

□ 정원충족률

- 판단기준 : 시·도별 지정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 이전 6개월간 평균 정원충족률이 75.00% 이상(농어촌 50.00% 이상)인 어린이집
※ 정원충족률: $\text{현원}/\text{정원} \times 100$
※ 농어촌 지역이란, 농어촌 지역 및 농어촌 특례 지역 모두 포함
※ 정원충족률 산정기간은 각 시·도별 보육환경을 감안하여 1년까지 확대하여 적용 가능하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배점기준 : 평균 정원충족률 75.00% 이상(농어촌 50.00% 이상) (17점)
지역별 표준편차를 적용한 정원충족률 이상~75.00% 미만(농어촌 40.00% 이상 ~ 50.00% 미만) (12점)
지역별 표준편차를 적용한 정원충족률 미만(농어촌 40.00% 미만) (7점)
※ 어린이집 평균 정원충족률이 75.00% 미만인 어린이집의 경우, 75.00%에서 지역 정원충족률 표준편차를 제외한 정원충족률로 적용(평균 정원충족률 및 표준편차는 2023년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p.100 참조)
예시 A시도의 2022년 평균 정원충족률에 대한 표준편차가 24.87라고 가정하면, $75.00\% - 24.87 = 50.13\%$ 임
• 어린이집 평균 정원충족률 75.00% 이상(17점), 정원충족률 50.13% ~ 75.00% 미만인 경우(12점),
정원충족률 50.13% 미만(7점)

참고

▪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산정 시 주의사항**

- 정·현원은 기본보육 영유아를 기준으로 함 (연장보육, 야간연장, 시간제, 방과후 아동 제외)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경우, 전체 정원에서 시간제 정원은 제외하고 적용

예시 총 정원 80인인 기관에서 시간제 1개반(3명) 운영 시 ⇒ 정원 77명으로 간주

※ '23년 연도전환으로 인해 '23년 2월 정·현원 현황의 실제 기록과 시스템 자료가 상이할 경우 어린이집에서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 확인하여 대체 가능

□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여부**

- 판단시점 : 시·도별 지정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전 3년

예시 공고일이 '23년도 5월인 경우 '20년도 5월부터 '23년도 4월까지임

- 배점기준: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이 없는 경우(3점),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이 있는 경우(0점)

나) 보육서비스

□ **연장반 운영 및 전담교사 채용 여부**

- 판단시점 : 시·도별 지정계획 공고일 현재
- 판단기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등록된 연장반 운영 및 전담교사

참고

▪ **연장반 전담교사의 범위**

① 신규채용 교사 ② 기본보육시간 보조교사 근무 후 연장반 전담 ③ 야간연장(시간연장) 교사로서 연장반 전담

※ 기본보육 담임교사(교사 겸직 원장 포함)의 연장반 겸임은 인정 불가

- 배점기준 : 연장반의 50% 이상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3점), 연장반의 20%이상 ~ 50% 미만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2점), 연장반의 20% 미만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 또는 연장반 미운영하는 경우(1점)

□ **열린어린이집 지정 여부**

- 판단시점 : 시·도별 지정계획 공고일 현재

※ 현관 또는 지정서로 지정 여부 확인

- 배점기준: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경우(5점),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0점)

□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 대상 : 장애아, 야간연장, 휴일보육

- 판단시점 : 시·도별 지정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1년 동안 6개월 이상 운영(연속 6개월이 아니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이 있는 월의 합이 6개월 이상이면 인정)

※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담당 공무원의 사실

확인을 통해 인정 가능 (보육통합시스템 내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여부 확인 등)

※ 단, 야간연장어린이집 등으로 지정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경우 취약보육서비스로 인정하지 않음

- 배점기준: 취약보육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2점), 취약보육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0점)

□ 시간제보육 운영 여부

- 대상 :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은 어린이집
- 판단시점 : 시·도별 지정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 기준 최근 1년 동안 6개월 이상 운영(연속 6개월이 아니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이 있는 월의 합이 6개월 이상이면 인정)
-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 시간제로 등록되어 있으며, 시간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만 해당
- ※ 시간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기준 : 2023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공통) 이용시간 40시간 이상 (선택) 이용건수 10건 이상 또는 이용아동 수 2명 이상

- 배점기준: 시간제보육을 운영하는 경우(1점), 시간제보육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0점)

□ 최근 6개월간 급식·간식재료비 기준 이상 지출여부

- 판단시점 : 시·도별 지정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이전 6개월
예시) 공고일이 '23년도 5월인 경우, '22년도 11월부터 '23년도 4월까지임
- ※ 판단시점 내에 연도 전환되는 경우, 각 연도별 평균 급식·간식재료비 기준 충족 여부로 판단
- 배점기준: 영·유아 급식·간식재료비 기준 이상 지출하는 경우(4점), 영·유아 급식·간식 재료비 기준 미만 지출하는 경우(0점)
- ※ 급식·간식재료비 기준: ('21년~'23년) 영아 1,900원, 유아 2,500원
- ※ 지출 금액에 지자체 지원 급식·간식재료비는 미포함
- 확인방법: 최근 6개월간 '영·유아 평균 급식·간식재료비 기준 금액' 대비 '영·유아 평균 급식·간식재료비 실제 지출 금액'을 비교하여 기준 이상 지출 여부 확인

영·유아 평균 급식·간식재료비 기준 금액 ¹⁾	영·유아 평균 급식·간식재료비 실제 지출 금액 ²⁾
최근 6개월 (영아출석평균×1,900×평균보육일수) + (유아출석평균×2,500×평균보육일수)	최근 6개월 <급식·간식재료비> 지출 평균액

1) '21~'23년도의 경우, 출석 아동수 적용

2) 해당 기간 급식·간식재료비 실제 지출 금액에서 지자체 지원 급식·간식재료비 제외

다) 보육교직원 운영관리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

- 대상 : 원장 및 보육교사
- ※ 단, 보육교사의 경우 담임교사에 대해서만 적용(대체교사도 담임교사인 경우 포함)

- 판단시점 : 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 ※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기간은 유예기간으로 보며, 복직 후 반드시 보수교육 이수토록 함 단, 육아휴직증명서와 사유서 제출
- 판단기준 : 교육 수료일이 신청일 이전이면 인정(수료증 발급 등으로 증명)
- 배점기준 : 원장·보육교사 모두 이수한 경우(4점), 원장만 보수교육 이수한 경우(2점), 보육교사만 모두 보수교육 이수한 경우(2점), 원장·보육교사 보수교육 미이수한 경우(0점)

참고

▪ 미이수자 범위

-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2년이 경과한 이듬해까지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
 - 예시 '19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는 '20년 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20년 이후 직무교육 이수자는 '23년 말까지 보수교육 기한이 남아있으므로 별도 서류제출 없음

□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 지정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6개월간 담임교사에게 지급된 월 평균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
-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일 경우, 원장은 보육교사 산정에서 제외
- 담임교사에 대해서만 산정
 - ※ 출산·육아휴직의 경우, 대체교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포함하여 산정
 - ※ 월 지급액 : 기본급, 제수당 등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포함
 - ※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국가·지자체가 직접 교사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시간외 근무수당, 탄력편성 수당은 미포함
 - ※ 담임교사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 전후 교사를 동일 교사로 간주하여 월 평균 급여를 산정하며 동 기간 중 반이 폐지 또는 증가되어 6개월간 평균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간 평균을 산정
 - ※ '23년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의거, 보육교사 1호봉 월 2,099,100원을 기준으로 차등 점수화

참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교사의 경우, 전일 근로 시간으로 환산하여 급여 산정

- 국공립 보육교사 1호봉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받던 보육교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시, 실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가 지급 되었을 경우 국공립 보육교사 1호봉 지급으로 인정

- 배점기준: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구간(6단계)별 배점기준 × 담임교사 수의 전체 합산한 값을 전체 담임교사 수로 나눈 값
- **계산식**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 [(15×a)+(12×b)+(9×c)+(6×d)+(3×e)+(0×f)]/N
 - ※ 소수 셋째자리 반올림, 해당 반 담임교사가 교체된 경우 전·후 교사를 1명으로 간주

참고

▪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구분	점수	해당 반 담임교사 수
1호봉(2,099,100원) 이상	15점	a
2,060,000원 이상~2,099,100원 미만	12점	b
2,040,000원 이상~2,060,000원 미만	9점	c
2,020,000원 이상~2,040,000원 미만	6점	d
2,018,580원 이상~2,020,000원 미만	3점	e
최저임금(2,010,580원) 미만	0점	f

계산식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 [(15×a) + (12×b) + (9×c) + (6×d) + (3×e) + (0×f)]/N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해당 반 담임교사가 교체된 경우에는 전·후 교사를 1명으로 간주

예시 담임교사가 7명인 시설의 경우 해당 반에 다음과 같이 급여를 지급했다고 가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6개월 평균
‘가’ 교사	2,099,100원						
‘나’ 교사	2,060,000원						
‘다’ 교사	2,040,000원	2,060,000원	2,060,000원	2,060,000원	2,060,000원	2,060,000원	2,040,000원
‘라’ 교사	2,020,000원						
‘마’ 교사	2,020,000원						
‘바’ 교사	2,019,100원						
‘사’ 교사	2,019,100원						

구분	점수	해당 반 담임교사 수
1호봉(2,099,100원) 이상	15점	1
2,060,000원 이상~2,099,100원 미만	12점	1
2,040,000원 이상~2,060,000원 미만	9점	1
2,020,000원 이상~2,040,000원 미만	6점	2
2,018,580원 이상~2,020,000원 미만	3점	2
최저임금(2,010,580원) 미만	0점	0
계		7

계산 : [(15점×1명)+(12점×1명)+(9점×1명)+(6점×2명)+(3점×2명)+(0점×0명)]/7명 = 7.71점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현 어린이집에서 근속한 보육교사 비율**

- 판단시점 : 시·도별 지정계획 공고일 현재

- **계산식** 3년 이상 근속보육교사 비율 : (3년 이상 근속 보육교사 / 전체 보육교사) × 100

2년 이상 근속보육교사 비율 : (2년 이상 근속 보육교사 / 전체 보육교사) × 100

※ 대체교사로 근무하다 담임교사로 직위가 변경된 경우, 대체교사로 근무한 경력도 근속 기간에 포함

※ 출산 및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

※ (출산, 육아휴직 이외의) 휴직의 경우 휴직 전후의 기간을 연속한 근무 기간으로 간주 단, 퇴직한 경우 퇴직 전 근무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예시 '20년 3월 1일~'22년 2월 28일 까지 근무하고 '22년 3월 1일~4월 30일까지 2개월간 휴직 후 '23년 3월 31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교사의 경우 '20년 3월 1일~'23년 3월 31일까지를 근속기간으로 간주하되, 휴직 기간은 제외하여 총 근속기간은 35개월로 산정)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에서 평가함

- 배점기준: 3년 이상 근속한 교사 50% 이상(5점),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50% 이상(3점),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 이상 50% 미만(1점),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30% 미만(0점)

□ 1급 보육교사 비율

- 판단시점 : 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 1급 보육교사 자격 인정 기준일 : 지자체에서 호봉산정, 임면보고 시 사용하는 기준일과 동일

예시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을 수료하고, 근무연한을 모두 충족하였어도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지 않은 경우는 1급 보육교사로 인정하지 않음

※ 단, 자격증 신청 후 자격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

※ 신청일 전일 포함 14일 이내 교사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이전 교사 기준으로 산정

- **계산식** (1급 보육교사 수)/(전체 보육교사 수) × 100

※ 보육교사가 총 3인인 어린이집에 한하여 1급 보육교사가 2인일 경우 70.00%로 인정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에서 평가함

- 배점기준: 70% 이상(농어촌 50% 이상)인 경우(10점), 50% 이상 70% 미만(농어촌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5점), 30% 이상 50% 미만(농어촌 15% 이상 30% 미만)인 경우(3점), 30% 미만인 경우(농어촌 15% 미만)(0점)

참고

▪ 보수교육 대상 및 1급 보육교사 비율 산정 방법

교사	등급	직위	비고	교사 수 산입	보수교육 대상
A	1급	만 1세반 담임	-	○	○
B	1급	만 2세반 담임	출산 휴가	○	×
C	2급	만 3세반 담임	-	○	○
D	2급	만 4세반 담임	육아 휴직	○	×
E	3급	만 5세반 담임	-	○	○
F	1급	연장보육 전담교사	-	×	×
G	2급	방과후 보육교사	-	×	×

계산식 1급 보육교사 비율 = [2명(1급 보육교사 수)/5명(전체 보육교사 수)] × 100

□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 학사학위를 소지한 보육교사 비율

- 판단시점 : 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 학위 전공 영유아 관련성* 여부 : 아동학, 보육학, 유아교육학 관련 전문학사 학위 이상 자격 인정

*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경우(복수, 부전공 명도 해당)

- **계산식** (관련학과 전문학사 학위 소지 보육교사 수) / (전체 보육교사 수) × 100

※ 보육교사가 총 3인인 어린이집에 한해 전문 학사학위를 소지한 보육교사가 2인일 경우 70.00%로 인정

- 배점기준: 70% 이상인 경우(4점), 50% 이상 70% 미만인 경우(2점), 50% 미만인 경우(0점)

□ 원장의 전문성

- 판단시점 : 지정계획 공고일 현재

- 배점기준: 3항목(각 2점 배점) 총 6점 배점(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점)

①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 3년 이상(2점),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보육교사 경력 3년 이상인 경우(1점)

-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경우, 보육교사 경력 산정에서 제외
- 유치원 교사 경력이 보육교사 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 반영되는 경우 보육교사 경력으로 인정(2023년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준용)
- 학위 전공 영유아 관련성 여부 : 아동학, 보육학, 유아교육학 관련 학사학위 이상 자격 인정
※ 학과(전공) 또는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경우(복수, 부전공 명도 해당)

② 원장으로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경우(2점)

- 현 어린이집 원장 재직 경력 뿐 아니라, 종전 근무 어린이집의 원장 재직 경력도 포함
※ 유치원 원장 경력이 어린이집 원장 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 반영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경력으로 인정(2023년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준용)

③ 원장으로서의 현 어린이집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2점)

- 현 어린이집에 임용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근속연수를 산정

□ 기타 자율 평가 항목(아래 항목 중 1개라도 해당되면 1점)

- 지자체에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실시하는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집
- 정부 시범사업 등에 우선 참여한 어린이집
- 급식·환경 등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 2023년 여수형어린이집 중 2023년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된 어린이집

여수시 공고 제2023-3083호

하반기 농가DB구축 기간제근로자(전산)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2023년도 하반기 농가DB구축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전산)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채용 등록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여 수 시 장

1 최종합격자 명단 : 1명

○ 응시번호 : 1-2

2 신규채용 등록

가. 등록일시 : 2023. 11. 13.(월) 18:00 까지

나. 등 록 처 :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농정팀)

3 등록 시 유의사항

가. 지정된 기일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농업정책과(농정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1-659-4404)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 -

면허 번호	연장 허가 번호	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적 (ha)	양식장 위치	면허기간	연장허가 기간	수산자원 조성금 (천원)	양 식 업 권 자		비고
								주 소	성 명	
11475	2023-64	패류양식 (바닥식)	7.00	돌산 신복	2013.12.23. 2023.12.22. (10년)	2023.12.23. 2033.12.22. (10년)	-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신복어촌계	
11471	2023-65	패류양식 (바닥식)	15.00	화정 둔병	2013.12.29. 2023.12.28. (10년)	2023.12.29. 2033.12.28. (10년)	-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자매어촌계	
11472	2023-66	패류양식 (바닥식)	20.00	화정 둔병	2013.12.29. 2023.12.28. (10년)	2023.12.29. 2033.12.28. (10년)	-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자매어촌계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23. 11. 10.

여 수 시 장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 -

면허 번호	연장 허가 번호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적 (ha)	어장 위치	면허기간	연장허가 기 간	수산자원 조성금 (천원)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10323	2023-67	마을어업	36.00	화양 안포	2013.12.29. 2023.12.28.	2023.12.29. 2033.12.28.	면제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세포어촌계	
10324	2023-68	마을어업	45.00	화양 안포	2013.12.29. 2023.12.28.	2023.12.29. 2033.12.28.	면제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세포어촌계	
10331	2023-69	마을어업	24.00	화양 안포	2013.12.29. 2023.12.28.	2023.12.29. 2033.12.28.	면제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자매어촌계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23. 11. 10.

여 수 시 장

공 시 송 달 공 고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세징수법」 제45조, 「지방세징수법」 제55조에 따라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공고내용: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11. 9. ~ 2023. 11. 23. (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7명
5. 문의사항: 여수시청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 (☎061-659-3592)

2023년 11월 9일

여 수 시 장

공시송달대상자 내역

연번	성명	주 소	서류의 명칭	공시송달 사유
1	곽*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_** , ***호	부동산 압류통지서	폐문부재
2	황*현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길 **, ***동 ***호 (마동, *****아파트)	부동산 압류통지서	폐문부재
3	김*재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구교*길 **, *동 ****호 (***)아파트)	부동산 압류통지서	기타
4	홍*태	전라남도 여수시 호명*길 ** (호명동)	부동산 압류통지서	폐문부재
5	박*길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북로 ***, ***동 ****호 (괴전동, 안심*****베스트)	부동산 압류통지서	기타
6	강*자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못동가는길 **_**	부동산 압류통지서	수취인불명
7	제*레	전라남도 여수시 진남로 **_** (군자동)	부동산 압류통지서	폐문부재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소유자 미상의 사유로 강제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와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11. 9.

여 수 시 장

1. 공 고 명 :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강제 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통지
2. 공고기간 : 2023. 11. 9. ~ 2023. 12. 8. (30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위 치	소유자	대상 또는 종류	수 량	비 고
둔덕동 489-13번지 도로	미 상	경운기	1	

4.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지시 및 고지사항
 - 상기 무단 적치물에 대해 자진철거 계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고, 적치물 철거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및 제3조(대집행의 절차),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규정에 따라 우리 시가 직접 행정대집행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 행정대집행은 우리 시 스스로 집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이 발생 할 경우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로시설관리과(☎061-659-51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23 - 3096호

행정대집행 고고서

성명 : 노상적치물(경운기) 소유자 귀하

주소 : 여수시 둔덕동 489-13번지 도로

도로법 제61조 및 제75조를 위반하고 있는 귀하 소유의 붙임 노상적치물(경운기)에 대하여 2023년 4월 16일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명령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3년 11월 9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도로법」 제73조 및 제96조에 의거 명령하며 동시에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고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고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또는 종류	수량	대집행 방법
여수시 둔덕동 489-13번지 도로	경운기	1	여수시 자체 집행 (철거 및 도로 원상회복)

2023년 11월 9일

여 수 시 장

□ 노상적치물 내역

연번	위반장소	적치물 내역			사 진
		품 명	규 격	수 량	
1	둔덕동 489-13번지 도로	경운기	2m*4m	1	

공 고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조례」 및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동시장(2017. 1. 3.) 및 봉산시장(2022. 1. 19.) 폐지에 따른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동시장, 봉산시장 관련 내용 삭제

2. 주요내용

-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 (별표 1) 봉산시장란 삭제
-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2조제2항) 내용 중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에서’ 를 ‘별표 2에서’ 로 한다
 - (별표 1) 도표 내 동시장란, 봉산시장란 삭제
 - (별표 3) 삭제
 - (별표 4) 삭제

3. 개정 조례(시행규칙)안 : 별첨

4. 입법예고기간 : 2023. 11. 10 ~ 11. 30.(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59675 여수시 시청로1(학동) 여수시 지역경제과

- 팩스: 061-659-5816

- 이메일(E-Mail): c8701976@korea.kr

6. 그 밖의 사항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지역경제과(전화 061-659-4547, 팩스 061-659-5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시행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조례 제 호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별표 1]		
구분	명 칭	주 소	구분	명 칭	주 소
상설 시장	<u>봉산시장</u>	<u>여수시 봉산 1로 12 (봉산동)</u>	상설 시장	<u>삭제</u>	<u>삭제</u>
	쌍봉시장	여수시 학동 2길 7 (학동)		쌍봉시장	여수시 학동 2길 7 (학동)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덕양시장	여수시 소라면 하세동길 10		덕양시장	여수시 소라면 하세동길 10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에서”를 “별표 2에서”로 한다.

별표 1 중 도표내 동시장란, 봉산시장란을 삭제하고, 별표 3, 별표 4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등급)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점포의 등급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그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u>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에서</u> 정하는 바와 같다.</p>	<p>제2조(등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별표 2에서 ----- --</p>

[별표 1]

시장별 등급표

시 장 명	구 분	등 급	구 역	비고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쌍봉시장	점포	1등급	1층(14, 15, 16, 17, 18)	5칸
		2등급	1층(13, 19, 20, 21, 22, 23, 24) 2층(전면적)	1층 : 7칸 2층 : 1칸
		3등급	1층(1, 2, 3, 4, 5, 6, 7, 8, 9, 10, 11, 12)	12칸
덕양시장	점포(장옥)	3등급	전면적	5칸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시장별 평면도 참조

[별표 3] (2014.5.21. 개정) (삭제)

동시장 평면도

숫자 - 점포호수, () - 등급별

전 면 적 (3 등 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	---	---	---	---	---	---	----	----	----

24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	----	----	----	----	----	----	----	----	----	----	----

봉산시장 평면도

(지하)

숫자 - 점포호수, () - 등급별

주차장 및 펌프실(1.239.15㎡)	
1 (3)	2 (3)

(1층)

숫자 - 점포호수, () - 등급별

1 (2)	통	3 (2)	4 (2)	5 (2)	6 (2)	통	7 (2)	8 (2)	9 (2)	10 (2)	통	11 (2)
2 (3)		통 로					통 로					12 (2)
22 (3)		21 (3)	20 (3)	19 (3)	18 (3)		17 (3)	16 (3)	15 (3)	14 (3)		13 (2)
23 (3)		24 (3)	25 (3)	26 (3)	27 (3)		28 (3)	29 (3)	30 (3)	31 (3)		32 (2)
	로	통				로						
42 (3)		41 (2)	40 (2)	39 (2)	38 (2)	37 (2)	36 (2)	35 (2)	34 (2)	33 (2)		
43 (3)		44 (2)	45 (2)	46 (2)	47 (2)	48 (2)	49 (2)	50 (2)	51 (2)	52 (2)		
화 장 실		통 로				통 로				화 장 실		
		60 (1)	59 (1)	58 (1)	57 (1)	56 (1)	55 (1)	54 (1)	53 (1)			

(2층)

숫자 - 점포호수, () - 등급별

1		3	4	5	6		7	8	9	10		11
2		전면적 3등급					전면적 3등급					12
22		21	20	19	18	통	17	16	15	14		13
23	통	24	25	26	27		28	29	30	31	통	32
43		통				로	로					33
44	로	42	41	40	39		38	37	36	35	로	3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화장실		통 로					통 로					화장실
		63	62	61	60	59	58	57	56	55		

(3층)

숫자 - 점포호수, () - 등급별

1 (3)	2 (3)	3 (3)
----------	----------	----------